



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

특수형태근로종사자

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시적으로 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되,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



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



골재살포기

도로, 활주로 등 노반공사에 필요한 각종 골재, 시멘트, 흙, 물을 혼합한 소일시멘트 등의 재료를 소요의 폭(2.3m~4.5m)과 소요두께(최고 300mm)에 맞추어 신속하게 살포해 주는 건설기계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


골재살포기 종류 및 작업 특성

자주식



- 독립된 엔진과 조향 시스템을 가진 차량형 장비로 살포 폭,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호퍼에 골재를 받아 컨베이어에서 살포박스를 통해 살포하는 방식
- 대규모 도로포장 공사에 적합

트럭 부착형



- 덤프트럭 적재함 뒤쪽에 살포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덤프 조작으로 골재가 흘러내리면서 균일한 살포 가능
- 보수공사 등 소규모 현장에 적합

트레일러형



- 트랙터 등 건설기계 뒤에 견인하는 구조로 살포구에서 중력 낙하 방식으로 살포하여 정밀한 살포가 불가능
- 소형 농촌도로, 임시 도로현장에 적합



골재살포기 작업 시 주의사항

작업 전

- 1 오일, 냉각수, 연료 등의 잔량을 확인하고 누유 여부를 점검한다.
- 2 장비의 외관상태, 타이어(또는 궤도), 브레이크, 조향 및 유압장치 등 주요 부위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- 3 살포 장치의 연결상태, 살포기 개폐장치 및 호퍼 내부의 이물질, 잔여물 여부를 점검한다.
- 4 작업 구간의 지반상태(연약지반, 경사면 등) 및 작업 반경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,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을 설치, 작업계획, 신호방법,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작업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한다.

작업 중

- 1 장비 운행 시 지정된 속도와 경로를 준수하고, 살포 중에는 장비가 전도될 수 있으므로 급출발, 급선회 등을 금지하며 지반이 견고한지 확인 후 작업한다.
- 2 장비가 가동 중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고, 시야가 제한되거나 후진을 할 경우에는 후진 경보음 및 카메라, 신호수를 활용하여 타 작업자와의 충돌을 예방한다.
- 3 폭우, 강우, 결빙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장비 제어가 떨어지므로 작업을 중지한다.

작업 후

- 1 유압장치, 살포구, 체인 등의 손상이나 과도한 마모가 없는지 점검하고 살포장치 및 호퍼 내부의 잔여물을 제거하여 다음 작업 시 오작동을 예방한다.
- 2 작업 완료 시에는 장비를 평탄하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고,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한다.



필수 안전보건교육



노무제공 시 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)

- 대상** •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,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
- 방법** • 작업 배치 전,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
※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
- 시간** •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* 또는 간헐적 작업**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)
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*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• **교육시간 1/2 면제**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
• **전체면제**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
- 내용** •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•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•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
•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

특별안전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)

- 대상** •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
•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
•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
- 방법** • 작업 배치 전
- 시간** •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,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
•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* 또는 간헐적 작업**인 경우)
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*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• **교육시간 1/2 면제**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
• **전체면제**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- 내용** • 공통사항 및 각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※ 건설기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

- ☞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~ 제40조, 제86조, 제89조, 제91조 ~ 제93조, 제98조, 제99조, 제196조 ~ 제206조
- ☞ 공단 기술지원규정(KOSHA GUIDE) C-48-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